



의안번호	제 2021 - 15호
보 고 연 월 일	2021. 6. 7. (제11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 I. 제140차 전체 회의 ..... 1
  - 1. 일시·장소 ..... 1
  - 2. 참석자 ..... 1
  - 3. 주요 안건 ..... 1
  
- II. 논의 결과 ..... 2
  - 1.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수정 ..... 2
  - 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 5
  - 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 10
  - 4.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 22
  - 5. 추진 일정 ..... 23
  
- III. 향후 일정 ..... 28

**【별첨】**

- 이재신,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 최성국, 유관모, “제8기 양형위원회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
- 이형일, “제8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범죄[균형법범 등] 검토”



# I. 제140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1. 5. 24.(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

- 전문위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범현, 유관모, 이재신, 이형일, 최성국,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간사 : 운영지원단장

## 3. 주요 안건

-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 검토

## II. 논의 결과

### 1.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수정

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 전문위원 11인 중 10인 포함 의견 /  
1인 제외 의견

#### ○ 다수 의견(10인) : 포함

-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① 형의 종류 선택 및 ② 형량 산정 시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형의 종류 선택 및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 제시가 미흡한 상태임
- 실무와 사회에서도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을 요청함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각급 법원)
- 모든 범죄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1) 가장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있는 범죄, 혹은 2) 해당 범죄의 유죄 건수 중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일정한 건수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
- 기업범죄적 성격의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 ○ 소수 의견(1인) : 제외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소득 또는 재산 비례 벌금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논의 없이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벌금형 양형기준은 현재까지 양형위원회가 하여 온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위해서는 비교법적 검토, 방대한 조사 작업 등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양형위원회에 당면한 과제가 많으므로, 그 과제를 먼저 수행함이 타당

#### 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전문위원 11인 중 10인 포함 의견 / 1인 제외 의견

##### ○ 다수 의견(10인) : 포함

-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해 온 결과 유사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음. 또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추가하면서 양형위원회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디지털 성범죄에 축소 한정하여 검토한 바 있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 소수 의견(1인) : 제외

~

- 합의 관련 양형요소는 매 기수 양형위원회의 각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에 따라 각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이를 어느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재검토 ⇨ 전문위원 11인 중 2인 포함 의견 / 9인 제외 의견

○ 다수 의견(9인) : 제외

- 상해치사,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 유기·학대치사 등 범죄는 모두 기본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그에 대하여 가중하는 형태로 권고 형량범위가 결정됨이 타당함. 따라서 기본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둔 채, 결과적 가중범위 권고 형량범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통계상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가 없음: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범죄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작량감경을 통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는 형량범위 설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특별가중영역의 적용 또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이탈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함

○ 소수 의견(2인) : 포함

-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일련의 범죄들(상해치사,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 유기·학대치사 등)에 대하여 형량범위의 기본 구간이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



있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쉽지 않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위 범죄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선행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임에도 기존 양형기준이 현저히 낮게 설정됨. 심지어 기본 형량범위가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까지 있어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형의 선고가 어렵고 구체적 타당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형량범위 상향 필요성 높음

## 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 가. 고려 사항

- 2007. 1. 26. 법률 제8270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항에서는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
- 제1~7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양형이 특히 어려운 유형의 범죄, 실무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 요청이 있는 범죄 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

### 나. 설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 (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 대상 범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

신망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역은 추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

○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해킹,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거래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음
- 발생빈도가 증가하였고 낮은 편이 아니며[2006~2008년 584건(0.14%) ➡ 2011~2020년 4,037건(0.25%)], 징역형 비율(71.04%)도 높은 편임

(2) 관세법위반범죄

○ 대상 범죄

- 밀수출입, 관세포탈, 가격조작, 밀수품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등

☞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역은 추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

○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 지도층 탈세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음
-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할 필요가 있음
- 발생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낮은 편이 아니며[2006~2008년 1,028건(0.25%) ➡ 2011~2020년 2,444건(0.15%)], 징역형 비율(70.34%)도 높은 편임

다. 설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

(1) 부동산투기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3인 포함 의견 / 8인 제외 의견

(가) 대상 범죄

- 공직자 부동산투기범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채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86①)],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주택지구 지정 정보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누설(\$57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미공개정보 이용행위(\$28②)], 직무상 비밀누설(\$28①)]
- 일반 부동산투기범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등기 전매 및 등기원인 허위기재(\$8)],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무허가 토지거래(\$26②)], 주택법위반[전매제한 위반 및 공급 질서 교란행위(\$101 ii, ii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수탁행위(\$7①)], 농지법위반[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취득(\$58 i)]

(나) 전문위원단 의견

○ 다수 의견(8인) : 제외

-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범죄유형이 다양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양형 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 실무적 요청이 크지 않음

※ 공직자 부동산투기범죄 통계(2011. 1. 1. ~ 2020. 12. 31.)<sup>1)</sup>

사건명 및 적용법조	전체	징역형	벌금형	단위: 명
				선고유예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	11	11	-	-
<b>전체</b>	<b>11</b>	<b>11</b>	-	-

※ 일반 부동산투기범죄 통계(2011. 1. 1. ~ 2020. 12. 31.)

단위: 명

사건명 및 적용법조		전체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농지법위반	58조1호	20	4	16	-
	59조1호	26	17	9	-
	<b>소계</b>	<b>46</b>	<b>21</b>	<b>25</b>	<b>-</b>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35	24	1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480	295	183	2
주택법위반	제101조 제2호	30	1	29	-
	제101조 제3호	39	33	6	-
	<b>소계</b>	<b>69</b>	<b>34</b>	<b>35</b>	<b>-</b>
<b>전체</b>		<b>630</b>	<b>374</b>	<b>254</b>	<b>2</b>

- 선거 등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상황인 점, 현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후 기소될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그간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경과 및 선정 기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소수 의견(3인) : 포함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공공기관의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비밀 누설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범행 다수

- 1)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죄가 처음 규정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에 불과함
- ②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사용 및 타인 제공·누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제1항)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명칭 변경 전 법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입 당시인 2009년 이후 총 3건에 불과함
- ③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제정 시인 2009년 이후 총 1건에 불과함
- ④ 미공개정보 부동산 거래 이용행위(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2항) 범죄에 관한 1심 판결은 위 법률 제정 시인 2009년 이후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음

확인

- 나아가 미등기 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취득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등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일관된 양형기준 마련 필요

(2) 군사기밀누설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2인 포함 의견 / 9인 제외 의견

(가) 대상 범죄

- 군기누설죄(군형법), 군사기밀누설죄(군사기밀보호법)
- 통계 현황(1심 보통군사법원 현황, 이중경합범 포함)

구분	평균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밀 누설범죄	7	36	13	6	4	2	11

(나) 전문위원단 의견

○ 다수 의견(9인) : 제외

- 실제 선고 건수가 너무 적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양형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후보에 공무상 비밀누설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수 의견(2인) : 포함

- 방산비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더 엄중한 양형 필요
- 사건 수가 많은 범죄는 아니지만 군에서 군사기밀의 특수성이 있고 이를 반영한 높은 법정형과 국가적·사회적 관심도 측면에서 중요함

### 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 가. 수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아동학대범죄

##### (1) 현황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2014년 시행, 2018년 수정
  -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2)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상당함
  -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500여 건으로,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함(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컸던 2020년 양형위원회 전체 접수 의견보다 많은 수준)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함.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여부, 유형의 재분류 여부,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여부, 양형인자의 정비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에서 2021. 6. 21.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예정임. 양형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양형기준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 양형기준 수정 방향

~

○ 제1 의견(6인) : 현재 설정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접근

- 아동학대 관련 처벌 규정을 모아 독립된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서 다루는 학대의 대상이 아동인 경우와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취약 계층인 경우를 범죄군에서부터 구분하여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요소가 유형 분류, 양형인자 등에 반영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 여러 개에 이르므로, 아동학대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해낸다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 아동학대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각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 함께 수정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되어 상당히 큰 작업이 됨

○ 제2 의견(4인)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독립된 범죄군으

로 설정

- 현재 아동학대범죄는 ‘체포·유기·감금·학대범죄군’에 포함되어 있는바, 아동학대범죄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와 함께 규정됨으로써 형량범위·양형인자 등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움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함이 타당

○ 제3 의견(1인) : 새로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범죄 양

형기준 수정으로 접근

-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살해죄는 이 유형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 44개에 이르는 범죄군 양형기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진 범죄는 가급적 살인범죄로 분류하여야 하고, 그것이 양형기준을 주로 참고할 법조계와 국민의 검색 편의에도 기여함

개정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3.16. 법률 제17932호]
제4조(아동학대치사)  <신 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수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

(1) 교통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9인 포함 의견 / 2인 제외 의견

(가) 현황

- 교통범죄 양형기준 2012년 시행, 2016년 및 2020년 수정
  -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나) 전문위원단 의견

○ 다수 의견(9인) : 포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2회 이상 음주 또는 0.2% 이상 음주운전일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징역 2년)보다 권고 형량범위[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

~



월 - 1년), 가중영역(8월 - 2년), ②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 - 2년), 가중영역(1년 - 3년) 등]가 낮아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된 상황임

-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판결들이 선고됨(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291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202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23호 등)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설정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할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소수 의견(2인) : 제외

-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그 적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균형법상 폭력범죄 ⇨ 전문위원 12인 중 6인 포함 의견 / 6인 제외 의견

(가) 현황 및 제안

○ 설정 대상 범죄

- 초병(상관, 직무수행중인 군인) 폭행·협박·상해, 영내폭행·협박, 직권남용(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균형법상 성범죄와 같이,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균형법상 폭력범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추진

○ 통계(1심 보통군사법원 현황, 이종경합범 포함)

구분		평균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폭력범죄	상관상해	5	24	3	5	4	7	5
	상관폭행·협박	13	64	16	14	12	6	16
	직무수행군인 상해·폭행·협박	20	98	17	32	23	12	14
	초병폭행·협박	25	126	24	45	32	9	16
	가혹 행위							
	직권	3	17	5	8	1	1	2
	위력	22	111	30	20	8	20	33

(나) 전문위원단 의견

○ 제1 의견(6인) : 포함

- 군사법원 사건 수 기준 폭력범죄가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군형법상 성범죄는 2020년 양형기준 설정됨)
- 상관폭행 등의 경우 이미 설정된 상관명예훼손(2019년) 등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구조임
- 폭력범죄군 중에서 가혹행위 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군 특성상 양형편차가 큰 범죄유형임

○ 제2 의견(6인) : 제외

- 2019년 군형법상 명예훼손, 2020년 군형법상 성범죄가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으므로, 시급한 군형법상 범죄는 이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군형법상 폭력범죄의 빈도, 양형위원회의 한정된 연구자원을 고려하면, 보다 양형기준 재검토가 필요한 성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수정함이 타당

(3) 성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5인 포함 의견 / 6인 제외 의견

(가) 현황

- 성범죄 양형기준 2009년 시행,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및 2020년 수정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년 시행

(나) 전문위원단 의견

○ 제1 의견(6인) : 제외

- 성범죄 양형기준은 수정 이력이 많기에, 다시 수정하는 것은 양형기준 불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개정 법률을 반영하는 것은, 개정 법률에 따른 사례 축적이 있을 이후에 착수함이 타당함

○ 제2 의견(5인) : 포함

- 개정법률 반영: 성범죄 양형기준은 각각의 대유형 안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유형을 분류함. 그런데 형법 개정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됨. 13세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 전 형법	형법 [시행 2020.5.19. 법률 제17265호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양형기준 체계상의 문제점: 별도 유형 분류와 양형인자 적용이 결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



~

서 각급 법원의 의견 제시로 드러남). 또한 누범 인자[특정 강력범죄(누범)과 동종 누범] 적용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수원고등법원 2020 노76호)

- 양형실무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 반영: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실무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지식재산권범죄(기술유출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4인 포함 의견 / 7인 제외 의견

##### (가) 현황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2012년 시행, 2017년 수정

##### (나) 전문위원단 의견

##### ○ 다수 의견(7인) : 제외

-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의 상한이 법정형 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①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이 1/2 가중되어 법정형 상한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 ②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법정형 상한에 해당하는 처벌이 합당한 사건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함
- 지식재산권범죄는 2019년 판결 선고 사건 중 양형기준 준수율이 조사된 41개 범죄군 중 4번째로 낮았는데[2019년 준수

을 하위 범죄군 ① 증권·금융범죄(69.0%), ②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70.7%), ③ 배임수증재범죄(75.1%), ④ 지식재산권범죄(76.8%)]<sup>2)</sup> 이는 모두 하한 이탈로(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통계 확인 결과), 범행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례들임 ⇒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 있음

- 구성요건·법정형이 2019년 신설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현재까지 선고된 바 없으므로(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통계), 참고할 양형례가 없음 ⇒ 이는 양형기준 설정·수정을 하더라도 적용할 사건이 적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

#### ○ 소수 의견(4인) : 포함

-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다양화로 인해 기술유출 사건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사의 존립에 위협이 초래되는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거액이 투자된 핵심 기술의 유출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외국 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 공동연구,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함
- 법정형에 맞추어 양형기준 상향 필요: 현재 양형기준은 가중영역의 경우조차 최대 4년(국내침해) 내지 6년(국외침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국내침해 10년, 국외침해 15년)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19 연간보고서, 193, 194면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은 2017. 5. 수정시행된 것으로서, 2019년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또한 상향 필요

※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행’에 대하여는 2019. 8.에 별도로 벌칙 규정 신설되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현재 양형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도 필요

- 국가 차원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노력: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등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범정부적 논의가 계속 중으로, 양형기준 강화 필요

#### (5) 뇌물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4인 포함 의견 / 7인 제외 의견

##### (가) 현황

-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시행

##### (나) 전문위원단 의견

- 다수 의견(7인) : 제외

- 법률 개정사항이 없고, 권고 형량범위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실무상 요청이 그다지 크지 않음
- 국제뇌물방지법위반은 선고 사례가 거의 없어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소수 의견(4인) : 포함

- 뇌물범죄는 2009. 4. 24. 1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개정이 없었는바, 현행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OECD 권고사항으로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요구되는바, 국제뇌물방지법위반을 뇌물범죄군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6)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3인 포함 의견 / 8인 제외 의견

(가) 현황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시행

(나) 전문위원단 의견

○ 다수 의견(8인) : 제외

- 당분간 현행 양형기준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2019년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사건 14건 중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이 3건, 제2유형(조직적 범행)이 11건임
-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실무상 요청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2019년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사건 14건이 모두 양형기준을 준수함

○ 소수 의견(3인) : 포함

- 현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으나, 유사수신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형 구분의 실효성 부족

- 현실에서 발생하는 유사수신 범죄는 일정한 계급적 조직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행되어 그 전체 피해액 규모 또한 막대하므로 전체 피해액 규모를 우선적인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즉, 수신액(또는 부당이득금액)을 기준으로 '① 5억 원 미만, 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③ 50억 원 이상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율하되, 양형인자에서 수신액 기준을 제외하고, 비조직적 범행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추가함이 상당
- 나아가 유사수신 범죄는 일반 서민다중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범죄로서 서민생활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전체적으로 상향할 필요 있음

#### (7) 인신매매범죄 ⇨ 전문위원 11인 중 2인 포함 의견 / 9인 제외 의견

##### (가) 현황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1년 시행, 2014년 및 2018년 수정

##### (나) 전문위원단 의견

##### ○ 다수 의견(9인) : 제외

- 인신매매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음. 당분간 현행 양형기준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즉, 2019년 선고 판결 중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



준이 적용된 사건은 모두 37건인데, 모두 약취·유인범죄이고 인신매매범죄는 없음. 2016년 이후 선고 판결 중 인신매매범죄에 관한 형법 제289조(특별법 포함)가 적용된 사건은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 3건, 영리인신매매예비 1건 등 4건에 불과함(예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음)

-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인신매매 관련 범죄군을 확대(성매매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하는 등 양형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법에서 인신매매등범죄를 넓게 규정한 취지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성매매범죄, 성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등 해당 범죄군에 포함되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재분류할 실익을 찾기 어려움

○ 소수 의견(2인) : 포함

- 인신매매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의 요청을 고려할 필요 있음
- 2021. 3. 24.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인신매매등범죄’에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 위반 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정(법률 제2조 2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현행 인신매매 양형기준은 『형법』 제31장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각각 규정된 약취·유

인·인신매매 범죄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여 인신매매범죄 군을 확대하여 양형기준을 재정립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 있음

- '인신매매 범죄'는 그 자체로써 죄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그와 연관된 일련의 범죄들도 죄질이 무거우므로 형량범위 상향할 필요 있음

#### 4.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구분	주제	포함 지지 전문위원 /의견 표명 전문위원
1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수정	1-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10/11
	1-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10/11
	1-3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재검토	2/11
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 죄군	2-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11/11
	2-2 관세법위반범죄	11/11
	2-3 부동산투기범죄	3/11
	2-4 군사기밀누설범죄	2/11
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 죄군	3-1 아동학대범죄	11/11
	3-2 교통범죄	9/11
	3-3 균형법상 폭력범죄	6/12
	3-4 성범죄	5/11
	3-5 지식재산권범죄	4/11
	3-6 뇌물범죄	4/11
	3-7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3/11
	3-8 인신매매범죄	2/11

※ 전문위원단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주제는 굵은 글씨 및 고딕체 표시

## 5. 추진 일정

※ 전문위원단 절반 이상 지지를 받은 주제 대상으로 임시 분류

구분	주제	전반기	후반기
1 전체 범죄군에 결친 양형기준 설 정·수정	1-1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	○
	1-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2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2-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 련 범죄		○
	2-2 관세법위반범죄		○
3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3-1 아동학대범죄	○	
	3-2 교통범죄		○
	3-3 균형법상 폭력범죄	○	○

○ 1-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고, 후반기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함

-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방안으로는 ①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②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③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에 ㉠ 전체 범죄군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설정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선거범죄는 구공판 기소되고 합의부에서 재판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유형 분류, 양형인자 등)에 관하여 충분한 법정공방이 가능함. 그런데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약식 사건(벌금형은 약식명령 70~80%, 판결 20~30%로 약식명령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적용한다면 구약식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실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구약식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소 방식(구약식 기소인지 구공판 기소인지)에 따라 벌금형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경우,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제,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함
  -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설정 방안에 따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비롯한 방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1-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과업으로 함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의 출장 조사가 어려운 점 고려)
  - 3-1 아동학대범죄는 양형기준 수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2021년 1월 무렵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신속한 양형기준 수정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과업으로 포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가 통상 이루어지는 양형기준 설정(2-1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2-2 관세법위반범죄)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2022년 4월 이후)에 진행
- 3-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은 최종 양형기준 수정이 2020년에 있었으므로 그 추이를 1년이나마 더 살필 필요 있으므로 8기 양형위원회 후반기(2022년 4월 이후)에 진행

※ 참고자료(운영지원단 작성 일정안)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1.5.10.(월)	○ 출범식
21.5.24.(월)	21.6.7.(월)	○ 8기 추진 업무 의결
	21.6.21.(월)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21.7.26.(월)	21.8.9.(월)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 의결
21.9.13.(월)	21.10.1.(금) 워크숍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방안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21.11.8.(월)	양형연구회 7차 심포지엄
21.11.22.(월)	21.12.6.(월)	○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심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 범위)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2.1.10.(월)	22.1.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의결</li> <l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수정안 의결</li> </ul>
22.2.28.(월)		<b>공청회</b> <b>[대상: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b>
22.3.14.(월)	22.3.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최종 의결</li> <l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ul>
22.4.18.(월)	22.5.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li> <l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li> </ul>
22.6.20.(월)		<b>양형연구회 8차 심포지엄</b>
22.6.13.(월)	22.6.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수정안 확정</li> <l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수정안 확정</li> </ul>
22.8.16.(화)	22.8.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법상 폭력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li>○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ul>
22.9.5.(월)	22.9.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li> <l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li> </ul>
22.9.26.(월)	22.10.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심의(1)</li> </ul>

~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워크숍	
22.10.31.(월)		양형연구회 9차 심포지엄
22.11.21.(월)	22.1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심의(2) 및 설정안 의결</li> <l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li> <l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li> </ul>
22.12.26.(월)	23.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의결</li> <l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유기준) 및 설정안 의결</li> </ul>
23.2.13.(월)		<p style="text-align: center;"><b>공청회</b></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안,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p>
23.3.13(월)	23.3.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l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l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li> </ul>

### III. 향후 일정

- 일시 : 2021. 8. 23.(월) 15:00 ~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 안건

- 제8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설정·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안의 구체적인 논의